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616
------	------

2024. 3.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이용균 의원(찬성자 10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3.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용균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와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문 및 인문학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제정)에 따라 서울시민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서울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사업 현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주관부처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문학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법령에 따른 주관부처 및 의무사항 >

구 분	주관부처	법령상 의무사항	서울시 의무사항		비고
			소관실국	주요내용	
인문학	교육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평생교육국	市 인문학 시행계획 제출(매년)	계획 미제출
인문정신문화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문화본부(서울도서관)	市 인문정신문화 시행계획 수립(매년)	제출

- 이에 서울시 역시 평생교육국과 문화본부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인문학 진흥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생교육국에서 인문학 관련 강의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본부는 역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서울시 인문학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각 구의 유휴공간(18개구, 213곳)을 주민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및 인문교양교육 운영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2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시립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에서 심리학, 외국 문화 등 인문학 강의 운영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3	시립 청소년센터 운영	시립 청소년수련관 21곳에서 인문학 등 사회적 현안 연계교육 실시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4	모두의 학교 운영	시민 대상 열린 평생학습공간 모두의 학교에서 예술, 철학 등 인문학 강의 운영	평생교육국(평생교육진흥원)
5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인문학적 지식과정 운영	평생교육국(평생교육진흥원)
6	서울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건국대 등 30개 서울 소재 대학과 인문특화 강좌 운영	평생교육국(평생교육진흥원)
7	시사편찬	서울역사, 서울역사 대중서 발간	문화본부(서울역사편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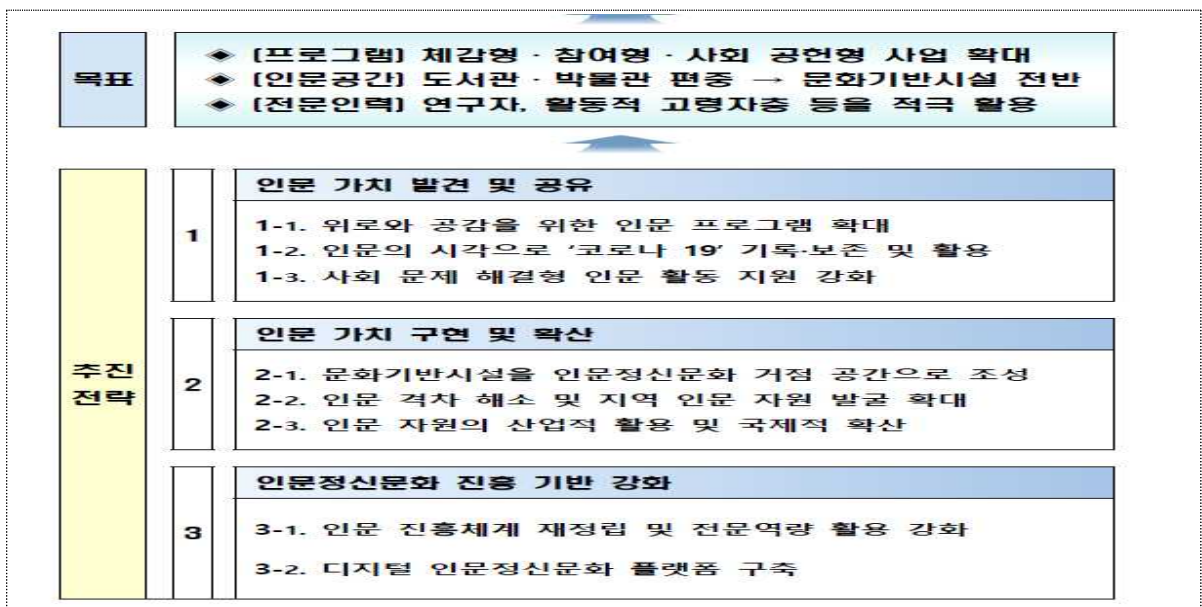
-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¹⁾ 아래 서울시는 문화본부 및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 시설에서 문학기행, 서울역사교육, 미술교육 등이 추진 중이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인문정신문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서울 문학기행 운영	서울 문화명소 탐방 및 강연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	정기 인문학 강좌	역사, 예술, 철학 등 인문학 강좌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3	서울역사교육	가족, 성인 대상 역사명소 탐방 및 교육	문화본부 (서울역사편찬원)
4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역, 미술가 연계 찾아가는 미술교육 및 미술감상교실 운영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교육과)
5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운영	서울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 교양강좌 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거점 공간 조성, 전문인력 확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나,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 >



1)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2021.12.21.)

서울시는 문화본부와 평생교육국으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단순히 시민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문정신 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개념을 정비하고 사업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법²⁾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시행계획을 서울도서관에서 수립하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제정의 필요성

- 교육부 자료³⁾에 따르면, ▶대학의 인문학 교육 기반이 위축되고 있고, ▶인문학 연구 예산은 감소하는 상황이며, ▶인문학의 학문 후속세대가 급격하게 소멸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조사⁴⁾에 따르면, ▶사회변화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며, ▶젊은 MZ세대의 번아웃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도 인문학과 인문정신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인문학의 진흥과 시민의 정서적 힘을 강화시켜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3년도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안)’, 교육부, 2023.06.

4) ‘2022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2.12.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함.

라. 주요 조문 검토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인문정신문화의 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입법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법 제3조를 그대로 준용하였음.

- 다만,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p> <p>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p> <p>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p>

(2)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안 제4조)

-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조 제목의 경우 정형화된 것이 없어 자치법규의 내용에 따른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면 되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향유할'을 '누릴'로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안 제3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안 제4조는 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다만, 안 제2조에서 범명을 약칭하였으므로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안 제5조~안 제6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법 제15조와 제16조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인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한 것임.
- 다만, 상위법령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할 경우 법령 변동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을 드림.

< 안 제6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p>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p>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4)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였음.
- 다만, 협력체계 기관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8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대해 침범할 수 없음.

<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주관부처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으로 서울시장의 사무에 해당함.

따라서 시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제하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수정 의견 >

제 정 안	수정 의견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마. 종합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인문학의 발전과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재 부서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교육으로 한정된 사업 중심에서 전향적 신규사업 발굴 및 문화본부 전체를 아우르는 추진체계로 재정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1. 수정이유

- 입법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의 변동에 따라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규정함(안 제1조).
- 나. 일부 조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킴(안 제2조, 안 제6조).
-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서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제목을 수정함(안 제3조).
-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7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p>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누
릴 -----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10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

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
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